

2019년 SW융합 맞춤형 글로벌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지침

2019. 7.

1 사업비 관리

1. 사업비 집행관리

가. 용어의 정의

- “사업비” 이라 함은 『SW융합 맞춤형 글로벌 지원사업』 선정기업이 지원 받은 금액의 100%로, 글로벌 사업화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
- “테크노파크” 라 함은 인천테크노파크 『소프트웨어(SW)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』를 말한다.
- “사업기간” 이라 함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수행을 위해 정해진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.

나. 사업비 지급

- 사업비 신청 전 참여기업 명의의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다.
- 선정기업은 협약과 동시에 1차 사업비(사업비의 80%)을 지급신청 하고, 테크노파크는 전용계좌에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한다.
※ 사업비 지급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
- 2차 사업비(사업비의 20%)은 중간점검 후 사업 수행 및 지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다.
- 중간점검 결과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테크노파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다.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

- 선정기업은 사업 신청 시 당해 협약과제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‘사업비’ 라 한다)을 계상하거나 테크노파크가 이를 검토·조정 할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 지원비의 구성표

비목	세목	산정기준
인 건 비	임 금	신규 참여인력 인건비 ※ 사업비 중 30% 이내
운 영 비	재료비	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나 부품 구입
	일반용역비	위탁제작비용, 해외지재권 출원·등록비, 선적료 등

2 임금

구분	주요내용
사용용도	• 신규 참여인력 인건비
계상/산정 기준	• 사업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• 전체 사업비 중 30% 이내 산정 • 불인정항목 : 기존 고용인력에 대한 산정 불가

- 산정기한 : 사업기간

3 재료비

구분	주요내용
사용용도	• 시제품(개량) 제작용 재료 및 부품의 구입·사용경비, 시험 분석료 등
계상/산정 기준	• 실제 필요한 경비 및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•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,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불가 • 불인정항목 : 사무용 컴퓨터, 빔프로젝트, 서버, 범용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

-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시제품 등 제작·완료 되어야한다.
- ※ 단, 사전요청에 따라 완료기간 연장 가능(2주 이내)

4 일반용역비

구분	주요내용
사용용도	• 상용화 시제품(개량) 외주 제작경비 등 • 수출제품에 대한 선적료 • 해외지식재산권(PCT 포함) 출원·등록비 • 제품 디자인 제작비 • 외국어 제품동영상 및 카다로그(전자) 제작 등
계상/산정 기준	• 실제 필요한 경비 및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• 시제품, 시작품, 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및 용역 계획서 등을 근거로 산정 • 불인정항목 : 회의비, 출장비 등 산정 불가

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기관의 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 및 제작 서비스 경력이 있으며 관련분야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업체 또는 테크노파크에서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업체 • 외주용역계약은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
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기관 제한 업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기관의 대표와 본인,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•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은 불가

- 협약 시 제출한 사업비 사용계획서 이외의 구입한 품목 및 당해 지원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중 공공요금(제세공과금, 임대료, 관리비, 이체수수료)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2. 사업비 관리 · 전산 및 회계처리

가. 사업비 사용실적보고

- 선정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준하여 중간점검일 및 사업종료일 까지 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또는 테크노파크의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, 기교부한 사업비를 환수하고 해당 선정기업에 대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나. 사업비 사용관리

- 사업비의 사용관리 책임은 기업 대표자로 정한다.
- 협약기업은 당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(이하 '사업비계좌')를 개설·사용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과 무관한 입출금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되며, 사업기간 종료 후 지출할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협약기업은 사업비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,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(회사명 기재)의 사업비계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이 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- 협약기업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.
 - 1) 예산사용 계획기안, 결과기안, 지출결의서 등
 - 2) 영수증(계좌이체 확인서,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) 등
 - 3) 기 타 : 결과물 사진, 계약서,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- 사업비의 사용은 사업비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만 인정한다.
-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한다.
 - 1)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지급 시 법인은 법인명의, 개인은 업체명의로 포함된 통장으로만 지출을 인정한다.(회사명 없이 대표자의 성명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)
 - 2)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지급(계좌이체)은 15일 이내로 한다.
 - 3) 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.(계좌이체 또는 카드사용)
 - 4) 사업전용계좌에서 부가세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, 별도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(예: 부가세 포함 금1,100,000원을 지출할 경우 사업전용계좌에서 금1,000,000원을 이체하고, 사업계좌 외 통장에서 금100,000원을 이체,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금액을 사업계좌로 이체)
 - ※ 또는 총 사업비의 10%를 사업비계좌에 입금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, 사업종료 후 위탁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비정산
 - 5)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.
- 테크노파크는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,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제출의 지연 또는 미제출 및 중간점검 시 현장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다. 사업비 정산

- 테크노파크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검토를 실시한 후 참여기업에 수정 및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기업은 테크노파크에 이의신청(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, 1회에 한함) 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제출(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) 등 필요한 조치를

취하여야 한다. 단, 테크노파크의 요구에 불이행할 경우에 테크노파크는 해당 과제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협약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지원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테크노파크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-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비 잔액을 확정하여 테크노파크에 통보하고, 협약기업 책임자는 확정된 사업비 잔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2. 평가 및 결과보고

가.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

① 중간점검

- 중간점검은 사업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현장점검을 테크노파크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결과보고

- 선정기업은 사업종료일 후 1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 성공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

- 글로벌창업 성공부담금 제도는 맞춤형 글로벌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하였을 경우 성공한 기업의 이익을 SW융합클러스터 사업 또는 후속사업을 위한

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순기능적인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.

-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SW융합 클러스터사업에 관련하여 협약기업은 성공적 글로벌 진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.
- 창업성공에 해당하는 협약기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향후 기업 상장 시 SW융합 클러스터사업으로 성공부담금을 기부하도록 한다.
 - 상장 시 40,000천원 이상 기부
 - ※ 단, 협약 종료 후 5년(또는 10년) 이내 상장 시에 한함.
- 협약 종료 후 5년경과 수혜기업은 SW융합클러스터사업 및 향후 지원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약서에 의거 기부 할 수 있다.
- 본 주관기관에 기부된 성공부담금은 SW융합클러스터센터의 운영지원금 또는 기부목적에 맞게 재투자 되어야 한다.
- 주관기관은 협약기업에게 SW융합클러스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